

故 具然昌 教授 年譜 및 研究業績

故 具然昌 教授 年譜

- 1940년 1월 16일 황해도 아남에서 父 具允석, 母 정소원의 외아들로 출생, 이후 진주, 부산 등지에서 성장
- 1955년 景福中學校 졸업
- 1958년 景福高等學校 졸업 및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입학
- 1964년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졸업(法學士)
- 1968년 서울大學校 大學院 법학과 졸업 (法學碩士, 民事法 전공)
- 1969년 12월 17일 李海瑛과 결혼, 이후 1남2녀를 두게 됨
- 1970년 渡美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법대에서 교환연구원으로 연구
- 1971~75년 University of Illinois(Urbana-Champaign)의 법대에서 석사과정 이수(M.C.L. 학위 취득)
- 1976년 3월 慶熙大學校 法大 법학과 助教授 임용
- 1977년 12월 韓國環境法學會 발족과 더불어 상임이사 겸 간사로 임명됨
- 1978년 4월 慶熙大學校 法大 副教授로 승진
- 1981년 Fulbright 장학금을 수여받아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으로 유학
- 1984년 5월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법학박사(Ph.D.) 학위 취득
- 1984년 2월 慶熙大學校 法大學長으로 임명됨(88년 1월까지 재임)
- 1985년 4월 慶熙大學校 法大 教授로 승진
- 1988년 9월 韓國環境法學會 副會長으로 선출됨
- 1990년 10월 韓國環境法學會 會長으로 선출됨
- 1990년 12월 31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別世

故 具然昌 教授 研究業績

〈著 書〉

1. 環境保全法 解説(1978, 尚志文化社)
2. 環境保全法(1981, 三英社)
3. 環境法論(1981, 法文社, 改正版, 1984년)

〈論 文〉

I. 環境法 分野

1. 美國의 聯邦水汚染規制法(1973. 서울대 法學 14권 1호)
2. 公害防止를 위한 提言(1975. 10~1976. 2. 司法行政 제16권 10호~제17권 2호)
3. 公有河川用水權의 法的性質(1975. 12, 법조)
4. 公害와 因果關係에 關한 判例研究(1975. 8~9, 법조)
5. Reflections on Water Rights in Public Rivers(1975.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3)
6. 書評: Malcom F. Baldwin and James K. Page, Jr., ed., Law and Environment, New York, A. Conservation Foundation Publication, 1970(환경논총 제2권 제1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75)
7. 公害法의 體系的 研究(1976. 2~5. 법조 제25권 2~5호)
8. 環境規制方法論(1977. 법과 환경)
9. 公害訴訟과 因果關係의 立證(1977. 3~4月. 법률신문)
10. 環境對策基本法의 提案(1977. 경희법학 제14권 1호)

11. 環境保全法案의 檢討·批判(1977. 11. 법률신문, 1227, 1229호)
12. 環境對策을 위한 提言(1977. 12. 「법과 환경」三英社)
13. 環境對策立法상의 問題點(1977. 12. 「법과 환경」三英社)
14. 環境汚染(公害)防止의 制度的 接近方法(1978. 4. 경희법학 제15권 1호, 李根七과 공저)
15. 環境保全法の 問題點(1978. 8~9月, 변협 39호)
16. 環境法關係文獻紹介(1)(1979, 환경법연구 창간호)
17. 公害犯 處罰상의 몇가지 問題(1979. 7. 법조 28권 7호)
18. 環境基準의 維持 및 確保(1979. 8. 경희법학 제16권 1호)
19. 環境保全法을 둘러싼 諸問題點(1979. 10. 법조)
20. Legal Aspec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Korea(1979.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7)
21. 環境汚染被害救濟制度的 確立(1980. 환경법연구 제2권)
22. 環境保全에 關한 外國立法例와 우리나라 環境保全法の 問題點(1980. 7. 법무자문위원 논설집 4호)
23. 우리나라 公害判例(1981. 환경법연구 제3권)
24. 環境汚染의 私法的 救濟(1981. 6. 서울대 법학 22권 2호)
25. 土地利用規制와 環境保全(1981. 10. 사법행정)
26. 環境影響評價의 法的·行政的 側面에 關한 研究(1982. 환경보전 제3권 1·2호, 張志浩·金鳳式과 공저)
27. 韓國環境影響評價制度에 對한 몇가지 考察(1982. 환경법연구 제4권)
28. 環境과 土地—특히 環境保全의 側面에서—(1982. 5. 법과 토지)
29. 公害判例의 研究(1982. 김중환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현대민법학의 諸問題」)
30. 建築法상의 에너지保存規定의 에너지 政策的 意義(1983. 경희법학, 제18권 1호)
31. 民法上 地下水利用權(1983. 沈泰植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노동법과 현대법의 諸問題」)
32. 美國 國家環境政策法(NEPA)의 施行과 法院의 役割(1984. 환경법연구 제6권)

33. 公害訴訟에 있어서의 因果關係와 개연성 정도의 立證(1984. 11. 변협지 101)
34.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the NEPA Mechanism(1984. 경희법학 제19권 1호)
35. 公害賠償請求와 因果關係의 立證(1985. 2 고시계)
36. 公有河川用水權(1985. 7 고시연구)
37. 韓國 環境影響評價法의 性格과 그 實效(1985. 3. 사법행정)
38. 公害와 因果關係에 관한 判例研究(1985. 8~9월 법조)
39. 地下水汚染의 防止對策(1985. 환경법연구 제7권. 元學喜, 權五乘과 공저)
40. 民法上 水法關係의 體系論의 考察(1985. 경희법학 제20권 제1호)
41. Environment and World Citizenship(1985. 「Textbook on World Citizenship」, Kyung Hee University Press)
42.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 A Critical Evaluation of It's Legislative Scheme,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1985.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43. 日照權의 法的保護(1986. 7. 법률신문 1645호)
44. 韓國 環境行政의 오늘과 내일(1986. 경희행정논총 제2권 1호)
45. 公害와 因果關係에 관한 判例의 動向(1986. 安二瀾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民事法과 環境法의 諸問題」)
46.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in Korea(1987. 金辰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現代比較法의 諸問題」)
47. 韓國 環境立法 및 行政의 再照明(1987. 환경법연구 제9권)
48. 美國 國家環境政策法(NEPA)의 制度的背景, 法的性格 및 發展(1987. 全昌祚 박사 고회기념논문집 「現代法學의 諸問題」)
49. 「環境政策基本法(案)」에 관한 小考(1988. 환경법연구 제10권)
50. 美國 國家環境政策法(NEPA)의 制定背景, 法的性格 및 發展(1988. 경희행정논총 제3권 제1호)
51. 水質汚染에 의한 被害의 私法的救濟(1988. 5, 고시계)
52. 先進諸國의 環境政策(1988. 11, 국회 265號)

53. 에너지문제의 法的·政策的 接近의 必要性和 方向(1988. 경희법학 제23권 2호)
54. 日照權의 法的 保護(1988. 경희법학 제23권 2호. 權五乘과 공저)
55. 韓國 環境行政機能의 配分上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1989. 경희행정논총 제4권 1호)
56. 環境汚染의 私法的 救濟 再照明(1989. 환경법연구 제11권)
57. 公害와 自然的 災害의 共同原因과 賠償責任의 범위(1989. 2. 판례월보)
58. 環境汚染(公害)의 不法行爲責任(1989. 11. 사법행정)
59. 韓國의 社會構造와 環境教育(1990. 환경교육 창간호)
60. 環境汚染의 民事上 責任(1990. 황적인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損害賠償法の 諸問題」)
61. 산성비의 법적 접근(1990.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II. 民法

1. 農地轉用的 規制(1983. 경희법학 제18권 제2호)
2. 民法上 물(水)에 관한 法理(1984. 11. 고시연구, 민사법학 7號('87~'88))
3. 意見表示의 本質과 立法主義(1985. 9. 고시계)
4. 不法行爲의 因果關係(1985. 10. 월간고시)
5. 表見代理와 民法 제130조~135조(1987. 3. 고시계)
6. 身分行爲의 特質과 無效·取消(1987. 7. 고시계)
7. 人工的 妊娠의 法的 諸問題(1988. 1. 판례월보)
8. 遺留分返還請求權(1988. 3. 고시계)
9. 代理母契約의 概念과 그 有效性(1988. 9. 사법행정)
10. 有責配偶者의 이혼청구(1988. 10. 경희법학 제23권 1호)
11. 代理母契約의 法的接近(1988. 10. 경희법학 제23권 제1호)
12. 不法原因給與(1989. 10. 고시행정)
13.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物權의 請求權(1989. 11. 고시계)

14. 家族法 改正의 意義(1989. 12. 경희법학 제24권 1호)
15. 親權의 共同行使(1990. 8. 월간고시)
16. 親生子推定의 範圍(1990. 11. 월간고시)

III. 「環境保全」誌 기고 논문

1. 한국 환경입법의 오늘과 내일(1980. 1권 1호 16면)
2.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행정적 측면에 관한 연구(1982. 3권 1.2호 31면)
3. 법의 실효성과 환경보전(1984. 4. 15, 64호 2면)
4. 지하수오염방지 대책의 중요성(1984. 4. 15, 66호 3면)
5. 환경대책과 경제성장-세계 환경의 날에 부치는 글-(1984. 6. 15, 68호 1면)
6. 배출부과금제의 효율적인 시행(1984. 7. 15, 70호 2면)
7. 자연환경의 보전과 위락시설의 확충(1984. 10. 15, 76호 3면)
8. 환경대책 기구의 확충강화(1984. 12. 15, 80호 3면)
9. 조직화된 환경보전운동의 필요성-협회명예회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1985. 4. 30, 80호 3면)
10. 특별대책 지역제도의 실시를 촉구한다(1985. 6. 15, 92호 3면)
11. 폐기물 규제의 합리화(1985. 7. 30, 95호 3면)
12. 생활 소음의 규제의 필요성과 그 방향(1985. 10. 30, 101호 3면)
13.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구제의 확보(1986. 1. 15, 106호 5면)
14. 원자력 사고와 법적문제(1986. 5. 15, 114호 4면)
15.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수성과 문제점 1(1986. 5. 30, 115호 6면)
16.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수성과 문제점 2(1986. 6. 15, 116호 7면)
17. 개정 '환경보전법안' 검토(1986. 8. 15, 120호 6면)
18. 환경행정기구 확장의 의의-환경청의 기구확장에 즈음하여-(1986. 11. 15, 126호 5면)
19. 환경행정의 민주화(1986. 12. 30, 129호 4면)
20. 자연보호 단상(1987. 5. 15, 138호 5면)

21. 환경기본정책의 정립 필요성(1987. 10. 15, 148호 4면)
22. 재강조되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문제(1988. 2. 15, 156호 6면)
23. 시급한 환경행정의 제도적 기반확립(1988. 5. 15, 162호 4면)
24. 환경오염분쟁조정법안에 대한 검토(1988. 8. 15, 168호 4면)
25. 환경행정기능의 개혁 및 그 기능의 재조정(1988. 11. 30, 175호 3면)
26. 환경정책의 전환과 기업의 대응(1989. 3. 15, 182호 4면)
27. 환경보전을 위한 국내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의 방향-제17회 세계환경의 날에 즈음하여-(1989. 5. 30, 187호 4면)
28. 환경행정기구의 개혁방안 재검토(1989. 8. 30, 193호 4면)
29. 환경청의 기구확대와 환경보전협회의 항방(1989. 12. 15, 200호 4면)
30. 환경입법확충의 시급성-제18회 세계환경의 날에 즈음하여-(1990. 5. 30, 211호 2면)
31. 환경6법제정의 환경정책적 의의(1990. 7. 30, 215호 3면)
32. 환경보전협회의 위상정립의 방향(1990. 8. 30, 217호 6면)